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민철·김병주

신현영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용우 · 이원택 · 임오경

임호선 · 김남국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1조의2제1항제4호제나목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의2제1항제4호제나목 중 "추월"을 "앞지르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안전관리기준의 준수)	제31조의2(안전관리기준의 준수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주행 중인 차량을 <u>추월</u> 하는	나 <u>앞</u> 지르기
행위	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